

출입국관리법

[시행 2009. 6.20] [법률 제9140 호, 2008.12.19, 일부개정]

제 8 장의 2 난민의 인정등

제 76 조의 2 (난민의 인정)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(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)부터 1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1.12.29>

③법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,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1993.12.10]

제 76 조의 3 (난민인정의 취소) ①법무부장관은 제 76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난민협약 제 1 조C(1) 내지 (6) 또는 제 1 조F(a) 내지 (c)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법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1993.12.10]

제 76 조의 4 (이의신청) ①제 7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제 76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8.12.19]

제 76 조의 5 (난민여행증명서) ①법무부장관은 제 76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한다.

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.

④법무부장관은 제 3 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 월이상 1 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.

⑤법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 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

⑥법무부장관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1993.12.10]

제 76 조의 6 (난민인정증명서등의 반납) ①제 76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 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제 59 조제 2 항 · 제 68 조제 4 항 또는 제 8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은 때
 2. 제 60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통지를 받은 때
 3. 제 76 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
- ②법무부장관은 제 76 조의 5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14 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.
-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그 때에,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그 효력을 잃는다.

[본조신설 1993.12.10]

제 76 조의 7 (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)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 6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제 61 조제 1 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61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76 조의 8 (난민 등의 처우) ①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「난민협약」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.
- ③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 20 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서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.

1. 제 2 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받은 자
2.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
3. 그 밖에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제 76 조의 9 (난민 등의 지원) ①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,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, 제 76 조의 8 제 2 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.

②난민지원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한국어 교육 및 직업 상담
2. 사회적응훈련 및 정착지원
3. 의료지원
4.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2 항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, 업무의 민간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76 조의 10 (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)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